

석유화학 가격카르텔 꼼짝하지마!

공정위, 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경감혜택 박탈 … 범위도 명확히

8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도 혜 택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또 조사방해 사업자의 범위가 회사는 물론 임직원, 협회 등 사업자단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.

공정위는 7월17일 기업들의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 내용을 위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8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,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행위 자진시정, 위반행위 단순가담, 과 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감경 10가지 대상에 해당돼도 조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.

종전까지 사업자 범위가 과징금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임직원이나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조사 를 방해한 사건을 제재하면 논란이 있었다.

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담합조사 결 과가 주목되고 있다.

공정위는 2005년 4월 삼성토탈이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사 방해기업을 형사처벌하고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.

<화학저널 2005/07/19>